

준법통제기준

목 차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	나-A11-8-1
제2조(용어의 정의)	나-A11-8-1
제3조(적용)	나-A11-8-1
제4조(제정 및 개정)	나-A11-8-2

제2장 준법통제환경

제5조(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원칙)	나-A11-8-2
제6조(각 기관의 역할)	나-A11-8-2
제7조(준법지원인의 임면)	나-A11-8-2
제8조(준법지원인의 자격, 임기 및 지위)	나-A11-8-3
제9조(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)	나-A11-8-3
제10조(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)	나-A11-8-4
제11조(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)	나-A11-8-4

제3장 준법통제활동

제12조(법적 위험의 평가)	나-A11-8-4
제13조(법적 위험의 관리)	나-A11-8-4
제14조(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)	나-A11-8-5

제15조(일상적인 준법지원)	-----	나-A11-8-5
제16조(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)	-----	나-A11-8-6
제17조(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)	-----	나-A11-8-6
제18조(내부제보)	-----	나-A11-8-6
제19조(위반시의 처리)	-----	나-A11-8-7
제20조(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)	-----	나-A11-8-7

제4장 유효성 평가

제21조(유효성 평가의 규정 및 절차)	-----	나-A11-8-7
제22조(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)	-----	나-A11-8-8

제5장 기타

제23조(임직원 포상)	-----	나-A11-8-8
제24조(위임)	-----	나-A11-8-8

부 칙

본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-----	나-A11-8-8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별 표

[별표 1]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(제13조 관련)	-----	나-A11-8-9
---	-------	-----------

준법통제기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SK에코플랜트 주식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, 준법통제기준을 제정·시행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‘준법통제’란 회사가 경영활동 및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,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 활동 과정을 말한다.
2. ‘법적 위험’이란 임직원이 법령 및 본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·형사·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.
3. ‘준법지원인’이란 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 본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,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.
4. ‘준법지원조직’이란 준법지원인을 보조하여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,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중에서 준법지원인이 지정하는 부서를 준법지원조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) ① 본 기준은 회사의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.

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, 법률이나

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본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제4조(제정 및 개정)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. 단, 관련법규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변경이나 회사의 조직체계 변경에 따르는 등 단순 자구수정 등을 위한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2장 준법통제환경

제5조(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원칙)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,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.

제6조(각 기관의 역할) ① 이사회는 본 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.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 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감독한다.

② 대표이사는 본 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계를 구축·정비·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.

③ 준법지원인은 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한다.

④ 준법지원조직은 준법지원인을 보좌하여 준법통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준법지원인의 임면) 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
3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

③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,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,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④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선임의 경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제2항에 따른 해임의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준법지원인의 자격, 임기 및 지위) ①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.

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.

③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)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.

1.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
2. 본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
3.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정보·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
4. 회사 및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,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
5. 제반 법규 및 본 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요청
6.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
7. 준법지원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
8.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재임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

다.

제10조(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) ① 준법지원인은 본 기준에 의한 준법지원 및 통제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감사위원회, 대표이사에게 직접,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.

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.

④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
제11조(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)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제3장 준법통제활동

제12조(법적 위험의 평가) ①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 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평가 및 관리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.

②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·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.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과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,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.

제13조(법적 위험의 관리)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·외 제반 법규(별표 1 참조) 및 본 기준, 회사의 각종 내부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제반 법규 또는 본 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준법지원인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,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평가를 바탕으로,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준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)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.

②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준법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정기 준법교육: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교육
2. 채용 시 준법교육: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준법교육
3. 특별 준법교육: 준법지원인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교육

③ 준법지원인은 제2항의 준법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‘인터넷원격교육’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.

⑤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(일상적인 준법지원)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,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법지원인과 사전협의 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본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 위험 또는 준법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) ①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 계획을 수립하고, 정기적으로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.

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 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.

③ 준법지원인은 본 조에 의한 효과적인 자율점검을 위하여 부서별 자율점검 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(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) ①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반 법규 및 본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.

②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.

③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특정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 할 수 있다.

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⑤ 준법지원인은 준법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.

제18조(내부제보)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,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제보채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,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
제19조(위반시의 처리) ① 준법지원인은 제반 법규 및 본 기준 등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,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행위의 중지·개선·시정·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행위의 중지·개선·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제반 법규 및 본 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그 법적 위험의 크기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.

③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.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에 반영한다.

제20조(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)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②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 및 자료는 관련 법률근거 및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관한다.

제4장 유효성 평가

제21조(유효성 평가의 규정 및 절차) ①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지원 및 점검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② 이사회는 본 기준에 의한 준법지원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

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

③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·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·준법점검 및 보고체제·준법지원인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체제·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.

제22조(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) ①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거나 준법지원인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.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방안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.

제5장 기 타

제23조(임직원 포상) 준법지원인은 본 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을 예방하거나 및 감소시키는 등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.

제24조(위임) 준법지원인은 본 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<2026. 1. 1.>

본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(제13조 관련)

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국내·외 법규를 포함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
2.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, 정치자금법,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,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
3.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,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, 외국환거래법, 인지세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, 지방세법 등 회계 및 조세 관련 법령
4. 소프트웨어 진흥법,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정보기술 관련 법령
5. 개인정보 보호법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
6. 근로기준법,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,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,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, 국민건강보험법, 고용보험법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, 퇴직급여법, 국민연금법 등 HR 관련 법령
7. 저작권법, 특허법, 발명진흥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
8.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, 건설기계관리법, 위험물안전관리법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안전·보건 관련 법령
9. 건설기술 진흥법, 환경영향평가법, 물환경보전법, 하천법, 지하수법, 하수도법, 수도법, 대기환경보전법, 실내공기질 관리법,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, 소음·진동관리법, 토양환경보전법,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, 해양환경 관리법,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품질·환경 관련 법령

10. 건설산업기본법, 건축물관리법, 건축법, 주택법, 공공주택 특별법, 공동주택관리법,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농지법, 도로법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소방시설공사업법,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, 전기공사업법, 해외건설 촉진법, 전기사업법,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,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집단에너지사업법, 폐기물관리법 등 건설·에너지·배터리 사업 관련 법령
11.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연구소 운영 관련 법령
12. 상법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, 외국환거래법, 외국인투자촉진법, 형법 등 회사 일반 관련 법령